

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2026. 7. 2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



□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

기업명 (인증번호)	대표자명 (주소)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처분내용 (처분일)
		근거규정	처분사유	
(주)호○지기 (제2023-173호)	김○진 (경남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1**, 109호)	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4호	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려운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	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(취소일로부터 3년간 인증 제한) (‘26.7.2.)